

●환경부공고제2020-824호

「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」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
환 경 부 장 관

「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·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(2021년 1월 21일 시행)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물질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

- 전자우편 : nkhwang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678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(전화 044-201-6783, 전자우편 nkhwang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826호

「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」(환경부예규)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환 경 부 장 관

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

제정예규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업무가 유역·지방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할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적용범위(제3조)

-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·검사관련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사업장 및 점검 권한 등 구분

나. 관할 구역(제4조)

- 환경청별 점검·검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구분 및 오염도 측정(수질, 대기) 등 분석기관 구분

다. 업무 절차(제5조-제10조, 제13조-제18조)

- 통합허가사업장의 이행관리 업무(가동개시 및 시운전, 정기·수시검사, 개선명령, 자체개선계획서 수리, 배출부과금 부과 등)의 절차 명료화

라.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 관리(제11조-제12조)

- 사업장이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확인, 통합허가사업장의 점검·검사내용의 보고시기 등 정리

마. 통합허가 사업장의 표시(제19조)

- 통합허가 사업장을 표시하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●환경부공고제2020-839호

환경부는 코로나-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,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환 경 부 장 관

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

1. 측정유예기간

- (상반기 측정대상시설) 2020년 10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
 - * 기(既) 유예기간 : 2020년 7월 1일 ~ 2020년 9월 30일
- (하반기 측정대상시설) 2021년 1월 1일 ~ 2021년 3월 31일

2. 측정유예대상

- (상반기 측정대상시설)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,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